

[별첨] 타 시/도 조례 시행규칙 사례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 12. 30.] [인천광역시규칙 제3369호, 2024. 12. 30., 일부개정]

제15조의2(자연장지 내의 표지 설치 등) ①조례 제21조의3제4항에 따른 자연장지 내에서의 표지는 개별표지 또는 공동표지로 한다.

②**개별표지는 사용권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수목장림 내에는 개별표지를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21.9.30.>

③개별표지는 주위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추모목 등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④개별표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사망자의 이름

2.생년월일

3.사망일자 [본조 신설 2017-08-28]

김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 1. 1.] [경기도김포시규칙 제782호, 2023. 12. 29., 일부개정]

제7조(자연장지 사용) ① 자연장지의 1기의 면적은 가로, 세로를 각각 1미터(1제곱미터) 이내로 하며, 추모목 1그루 당 안치수는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연혁

② 추모목에 안치하는 경우 위쪽방향을 기준으로 시계방향으로 순차적으로 한다.

③ 자연재해나 그 밖의 사유로 추모목이 고사하거나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종으로 대체하여 식재한다.

④ 잔디장에 부부장을 운영할 수 있다.

⑤ **표지의 규격은 개인장 15cm×10cm(가로×세로), 부부장 20cm×15cm(가로×세로)로 하며, 재질은 잔디장은 석재질, 수목장은 나무재질로 한다.** 단, 자연장장 관리 운영에 특별히 지장을 주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다른 재질의 표지 사용이 가능하다.

[본조신설 2015.6.10]

광주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8. 7.] [광주광역시조례 제6419호, 2024. 8. 7., 일부개정]

제29조(자연장의 방법) 자연장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으로 빠른 회귀를 위하여 용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골분과 부드러운 흙(마사토 등)으로 혼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 용기 내에 분골된 유골과 흙(마사토 등)으로 채워서 매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 용기는 환경친화적인 용기사용을 의무화 한다.
3. 연고자의 이름 등을 기록한 개인식별용 명패의 설치는 자연장의 기본취지에 크게 어긋나지 않도록 최소한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4. 자연장에 필요한 개인식별용 명패 및 생분해가 가능한 천연소재의 용기 설치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